

방사능 오염 토양의 잔류방사능 허용기준 설정방안

김경덕, 김학수, 최영조, 손중권, 하종현, 이윤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요 약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전중이나 해체중에 오염 토양이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일단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사선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원자력법에서는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 \mu\text{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 Person · Sv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의 물질에 대해서는 소각 ·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체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처분장 및 핵주기시설에 등 원자력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연간 주민선량을 전 세계적으로 0.25 mSv 내지 0.30 mSv 수준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에서 받는 피폭이나 ICRP 60 권고에 따르면 주민선량 기준이 1 mSv인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가 없으므로 본 0.25 mSv 기준에 근거하여 주요 핵종별 토양 허용(잔류) 오염 기준을 최근 미국 NRC가 해체 안전성 확인에 사용중인 DandD 코드를 이용하여 시산하였다.

비파괴 검사 사고사례에 대한 방사선 위험도 평가체계의 적용

김주연, 안길훈, 박상현, 장한기, 이재기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요 약

기 개발된 중소형 방사선원에 대한 방사선 위험도 평가체계에 의거하여 국내의 비파괴 검사 수행시 보고된 사고사례에 대한 피폭량을 산정 및 비교하였으며 각 사고에 따른 작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피폭 및 위험도의 관점에서는 외부피폭에 의한 피폭경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산정한 피폭량은 사고 당시의 산정된 피폭량과 비교한 경우 사고 진행시 장비와 피폭자간의 실제거리 및 피폭시간의 도출 어려움으로 인해 과대평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좀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사용경험 및 사고사례에 대한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